



손해보험의 이해 14: 특종보험의 개념 및 종류

김동겸 선임연구원

■ 특종보험(特種保險, casualty insurance)이란 법률적인 규정이나 이론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보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의 보험을 의미함.¹⁾

- 특종보험은 산업화 이후 새롭게 등장하게 된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개발된 보험으로 미국에서는 기타보험(miscellaneous insurance), 일본에서는 신종보험(新種保險)으로 칭함.
 - 1840년 런던에서 Guarantee Society가 신원보증인에 대신할 신원보증보험을 판매한 것을 특종보험의 효시로 보는 견해가 있음.²⁾
-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은 다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특종보험은 법률상의 구분에 의한 개념이 아님.
 - 보험업법 제4조 1항에서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을 크게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음.³⁾

■ 특종보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부동산권리보험, 종합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휴업보험 등이 있음.

- 기술보험은 기계설비 및 장치, 전자기기,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 이와 유사한 목적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기계보험, 전자기기보험 등이 이에 속함.

1) 특종보험은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보다 추후에 등장한 보험종목으로서, 다양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총괄하여 특종보험이라고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실무상 해상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장기손해보험 종목을 제외한 보험종목을 총칭하고 있음.

2) 1825년 영국의 플레이트 글라스 보험회사가 런던시내의 상점 진열장 유리를 대상으로 유리보험을 취급한 것을 특종보험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 또한 존재함.

3) 한편,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 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낱씨보험계약을 포함시키고 있음.

-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과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 따라 국내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등으로 구분함.
 - 한편, 담보 성격에 따라 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과 사용자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으로 구분하기도 함.
-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임.
- 상법 제737조에서는 상해보험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손해를 보상하는 인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음.⁴⁾
- 부동산권리보험 또는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류위조, 사기, 숨은 하자 등 위험요소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는 보험임.

〈표 1〉 특종보험의 분류

구분(대분류)	구분(중분류)	구분기준
기술	건설, 조립, 기계, 전자기기, 기타	건설공사 중 공사목적물에 생긴 손해, 조립공사 중 조립목적물에 생긴 손해, 기계에 대한 손해, 전자기기에 대한 손해 및 자료복구비용 등을 보장
근로자 재해보상	국내, 해외, 선원,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 또는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장
책임	일반배상, 생산물, 전문직업인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상해	상해, 여행, 기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질병	-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종합	가계성, 기업성	개인이나 기업의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중 두 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권리	-	동산·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기타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기타	재물에 대한 도난손해, 유리에 대한 파손손해, 동물에 대한 손해,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자료: 1) 금융감독원(201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 보험의 종류.

2) 금융감독원(2012),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보험종목(계약) 구분기준.

4) 한편, 보험업법 제4조 3항에서는 상해보험을 질병보험 간병보험과 함께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음.